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(정기혁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(정기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4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9월 30일

발 의 자 : 강수진, 경수현, 고영옥, 권영애,
김경이, 김육영, 박영섭, 소형준,
양순임, 오중균, 이관우, 이용진,
이인순, 이일준, 이호건, 임태근,
임현주, 정기혁, 정병기, 정윤주,
정해숙, 진선아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63조의2에 따라 성북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
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교섭단체의 정의 및 기능(안 제2조~제3조)

나. 교섭단체의 구성 및 등록·변경 등에 관한 규정(안 제4조~제5조)

다.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사전협의 : 의회사무국

라. 입법예고 : 2024. 10. 10. ~ 2024. 10. 16.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교섭단체”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서 일정 수 이상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기능)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협의 및 정당 정책의 추진
2.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
3.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
4. 소속 정당과의 교류·협력
5.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

제4조(구성)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 다만,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.

제5조(교섭단체의 등록 및 변경 등) ①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·날인한 명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이를 보고할 수 있다.

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이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예산 등의 지원) ① 의장은 제3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및 대표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 필요에 따라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6조에 따른 예산지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지원할 수 있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구성된 교섭단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교섭단체 등록신청서

☐ 교섭단체명:

☐ 대표의원 인영부

성명	직인	사인

※ 직인명 예시: 00당대표의원의인

☐ 소속 의원 명부

연번	소속 정당	의원 성명	서명

년 월 일

대표의원 ○ ○ ○ (인)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

교섭단체 명칭(대표의원) 변경 보고

☐ 변경사항

구 분	당 초	변 경

※ “구분” 란에는 교섭단체의 “명칭 변경” 또는 “대표의원 변경” 등을 기재

☐ 대표의원 인영부 (대표의원 변경 시)

성 명	직 인	사 인

※ 직인명 예시: ○○당대표의원의인

☐ 소속 의원 명부

연 번	소속 정당명	의원 성명	서 명

년 월 일

대표의원 ○ ○ ○ (인)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귀하

[별지 제3호서식]

교섭단체 소속 의원 이동(정당 변경) 보고

□ 이동보고

대 상 의 원		이 동 사 항			비 고
소속 정당	성 명	일 자	내 용	사 유	

※ 이동사항 중 “내용” 란에는 “교섭단체 탈퇴”, “교섭단체 가입” 등을 기재하고,
 “사유” 란에는 “사직, 퇴직, 사망, 자격상실, 제명, 재선거·보궐선거 당선,
 비례대표의원의 의석 승계” 등을 기재

□ 정당변경 보고

의원 성명	정당 변경 사항			비 고
	당초 정당명	변경 정당명	변 경 일 자	

년 월 일

대표의원 ○ ○ ○ (인)

의 원 ○ ○ ○ (인)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귀하

[별지 제4호서식]

당적 취득(소속정당 변경) 보고

☐ 당적 취득보고

의원 성명	당적 취득사항		비 고
	취득한 정당명	취 득 일 자	

☐ 소속정당 변경보고

의원성명	정당 변경사항			비 고
	당초 정당명	변경 정당명	변 경 일 자	

년 월 일

의원 ○ ○ ○ (인)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귀하